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72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 김주영·조인철·오세희

정일영 · 위성곤 · 박해철

강준현 · 김기표 · 박희승

허성무 • 윤후덕 • 이기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 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

조의2 및 제41조의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생태관광의 육성)"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생태관광지역"으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 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의3(생태관광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에 대하여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생태관광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 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태관광의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1. 인증기준 및 절차
 - 2. 표시 활용방법
 - 3. 인증 유효기간
 - 4. 수수료
 -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은 생태관광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1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u>(생태관광의 육성)</u> ① 환경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	
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을 <u>지정</u> 할 수 있다.	<u>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u>
<u><신 설></u>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이 지정 목적 달성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
	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underline{2}$ 환경부장관은 $\underline{ extit{M1}}$ 항에 따라	<u>③</u> <u>생태관광지역</u> -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	
<u>지역"이라 한다)</u>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신 설></u>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 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 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 망
-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 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 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④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 제41조의3(생태관광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에 대하여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생태관광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 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태관광의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u>1. 인증기준 및 절차</u>
 - <u>2. 표시 활용방법</u>
 - 3. 인증 유효기간
 - <u>4. 수수료</u>
 -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은 생태관광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 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 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